

# 04 해외통상어로



UAE 전자송장(E-Invoicing) 도입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 UAE 전자송장(E-Invoicing) 도입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이유진  
UAE Leeum Tax Accounting  
대표이사/회계사

ELECTRONIC INVOICING

## 1. 들어가며: UAE 전자송장 제도, 한국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026년 5월 1일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정식 발효되면서, UAE는 우리 기업에게 다시 한 번 중요한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이 아랍권 국가와 체결한 첫 무역통상협정으로, 품목 수 기준 한국 92.8%, UAE 91.2%의 관세가 최장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UAE는 중동·아프리카 권역의 물류 및 투자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UAE를 중동 권역 사업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한국 기업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UAE 현지 사업 운영 측면에서 새롭게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있다. 바로 UAE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추진 중인 전자송장(Electronic Invoicing, 이하

‘E-Invoicing’) 제도다. UAE는 Peppol(Pan-European Public Procurement Online) 기반의 국제 표준 전자송장 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2027년 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2021년 GCC 최초로 전자송장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어지는 역내 디지털 세무 행정 전환 흐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다만 UAE 제도는 단순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수준을 넘어, ASP(Accredited Service Provider)를 중심으로 ERP·회계시스템·거래 데이터가 연결되는 새로운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별도의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UAE에 현지법인이나 지사를 두고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향후 VAT 등록사업자 및 UAE 내 B2B, B2G 거래를 중심으로 전자송장 대응 필요성이 점차 커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국 본사의 일반적인 수출거래 자체가 즉시 UAE 전자송장 의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UAE로 그대로 확장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UAE 법인세(Corporate Tax) 도입 초기에도, 일부 기업들은 “프리존(Free Zone)은 면세 지역이므로 무관하다”는 과거 인식에 머물러 등록 기한을 놓치거나 초기 대응에 혼선을 겪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전자송장 제도 역시 실제 적용 범위, 거래 구조 및 현지 운영 형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유사한 혼선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UAE 전자송장 제도의 구조와 도입 일정, 한국 제도와의 차이점, ASP 선정 시 유의사항, 그리고 UAE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 2. UAE 전자송장 제도의 법적 정의와 기술적 요건

장관령 제243호 제1조는 전자송장을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전송·수신 및 보관되는 구조화된 데이터 형식의 세금계산서”로 정의한다. 핵심 용어는 ‘구조화된 데이터 형식(Structured Data Format)’이다. UAE 재무부는 PDF, 워드 문서, 이미지 파일, 스캔본, 이메일 첨부파일 등 비구조화 형식은 전자송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회계 시스템에서 출력한 송장을 PDF로 변환해 거래처에 이메일로 보내던 종래와 같은 방식은 UAE 전자송장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UAE 전자송장 시스템이 요구하는 기술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 UAE 전자송장 기술적 요건

구분	요건
데이터 형식	XML 또는 JSON
표준 규격	UBL(Universal Business Language) 2.1 또는 PINT AE(Peppol Invoice for the Tax Administration of UAE)
전송 방식	Peppol 네트워크를 통한 ASP 경우 전송
전송 기한	거래일로부터 14일 이내
보관 의무	UAE 내 보관, 조세절차법(Tax Procedures Law)상 보관 기한 준수

자료: UAE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 3. 한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의 비교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해 본 우리 기업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 개념 자체는 낯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UAE 제도는 발급 구조와 정부 보고 메커니즘에서 한국과 본질적으로 다른 모델을 채택하고 있어, 한국 본사의 회계·세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초기 실무 대응 과정에서 구조적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표] 한국 vs UAE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비교

구분	한국	UAE
시행 시기	2010년 (법인사업자)	2026년 (파일럿) / 2027년 (전면 시행)
의무 대상	법인 전체 +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UAE 내 B2B, B2G VAT 등록 사업자
발급 방식	홈택스 직접 발급 가능	ASP(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경우 필수
데이터 형식	국세청 표준 전자세금계산서	XML/JSON (PINT AE 표준)
국제 표준 연동	국내 한정 자체 표준	Peppol 네트워크 (40개국 이상)
정부 보고 방식	발급 후 익일까지 국세청 전송	ASP가 FTA에 준실시간 보고

자료: 한국 국세청, UAE 재무부

한국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국세청(Hometax) 중심의 중앙집중형 구조에 가깝다면, UAE는 정부 인증 사업자인 ASP(Accredited Service Provider)를 중심으로 송장 데이터가 교환되는 분산형 네트워크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UAE에서는 사업자가 FTA(Federal Tax Authority)에 직접 송장 데이터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증된 ASP를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해야 한다.

이 구조는 일반적으로 '5-Corner Model' 또는 'DCTCE(Decentralized Continuous Transaction Control and Exchange)' 방식으로 설명된다. 거래 흐름은 통상 다음과 같이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양측 ASP는 각각 FTA에 세금 데이터 문서(Tax Data Document, TDD)를 보고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거래 데이터의 정확성과 시스템 간 연계 안정성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사실상 국내 국세 행정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면, UAE는 처음부터 Peppol이라는 국제 표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UAE가 국제무역과 해외 기업 비중이 높은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양한 국가와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 4. 시행 일정 및 적용 대상

장관령 제244호에 따른 단계별 시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UAE 전자송장 단계별 시행 일정

일자	내용	적용 대상
2026.7.1	파일럿 프로그램 개시	재무부 선정 기업(Taxpayer Working Group)
2026.7.1	자발적 참여 개시	희망 기업 전체
2026.10.30	ASP 지정 마감 <b>(2026.5.11 개정)</b>	연 매출 5천만 디르함(약 1,361만 달러) 이상 기업
2027.1.1	전자송장 의무 시행	연 매출 5천만 디르함 이상 기업
2027.3.31	ASP 지정 마감	연 매출 5천만 디르함 미만 기업
2027.7.1	전자송장 의무 시행	연 매출 5천만 디르함 미만 기업
2027.10.1	전자송장 의무 시행	정부 기관 (B2G)

자료: UAE 장관령(Ministerial Decision) 제244호(2025년) 및 2026년 5월 11일자 개정



당초 장관령 제244호는 연 매출 5천만 디르함 이상 기업의 ASP 지정 마감일을 2026년 7월 31일로 정했으나, UAE 재무부는 2026년 5월 11일 시장 준비상황과 업계의 피드백을 반영한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며 해당 기한을 2026년 10월 30일로 3개월 연장했다. 다만 의무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은 유지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ASP 선정 이후 실제 시스템 연계, ERP 매핑 및 테스트에 활용 가능한 기간이 예상보다 촉박해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같은 날 발표된 장관령 제64호 개정안은 ASP 인증 체계와 관련한 일부 협업 구조와 관련된 규칙도 일부 완화했다. UAE 현지 사업자가 국제 ASP와 협력하거나, 제3자 PSP(Payment Service Provider) 및 기술 제공업체와 협업하는 구조가 가능해지면서 시장 내 솔루션 선택지가 확대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Peppol 인증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운영 경력 요건은 유지되며, 최종적인 컴플라이언스 책임은 인증받은 ASP에 귀속된다. 2026년 5월 기준 사전 승인된 ASP는 32개사이며 계속해서 승인 사업자는 확대될 전망이다.

매출 기준은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상 총수익(Gross Revenue)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또한 프리존(Free Zone)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UAE 내 B2B 또는 B2G 거래를 수행하는 VAT 등록사업자가 제도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프리존 기업의 법인세 우대(Qualifying Free Zone Person 등)와 전자송장 의무 여부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 적용 제외 대상

장관령 제243호 제4조는 다음 거래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향후 재무부 장관의 별도 결정 시까지 제외
- 정부의 주권적 활동(Sovereign Activities): 민간과 경쟁하지 않는 정부 고유 기능
- 항공사의 국제 여객, 화물 운송 서비스: 전자 항공권(E-Ticket)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대체되는 경우 (24개월 한시 유예)
- 특정 금융서비스: VAT 면세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서비스

여기서 국제 화물 운송 서비스가 24개월 한시 유예 대상이라는 점은 우리 수출기업 입장에서 짚어볼 만하다. 즉, 항공·해상 운송 자체에는 한시적으로 전자송장 의무가 면제되지만, 그 화물의 매도인-매수인 간 거래(인보이스)에는 정상적으로 전자송장 의무가 적용된다. 운송 단계와 매매 단계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 5. 과태료 규정

내각령 제106호(2025년)가 정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표] 전자송장 관련 과태료 규정

위반 유형	과태료	비고
전자송장 시스템 미도입 또는 ASP 미지정	월 5,000디르함(약 185만 원)	미지정 기간 매월 부과
전자송장 미발행 또는 지연 발행	건당 100디르함(약 3.7만 원)	월 최대 5,000디르함 상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FTA 미신고	일 1,000디르함(약 37만 원)	2영업일 이내 신고 의무
전자송장 데이터 미보관	건당 10,000디르함(약 370만 원)	-
데이터 미보관 재범 (24개월 이내)	건당 20,000디르함(약 740만 원)	-

자료: UAE 내각령(Cabinet Decision) 제106호(2025년)

다만 2026년 7월부터 시작되는 파일럿 기간 중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업에는 위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스템 안정성과 ASP 연동 품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인 만큼, 의무 시행 대상 기업이라면 파일럿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한다.

## 6. ASP(Accredited Service Provider)의 역할과 선정

ASP는 UAE 재무부로부터 전자송장 서비스 제공 자격을 인증받은 사업자를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이 FTA에 직접 송장 데이터를 송신하는 경로는 차단되어 있어, 모든 거래는 ASP를 거쳐야만 한다. ASP가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기업의 ERP 또는 회계 소프트웨어와 연동하여 송장 원천 데이터 수신
- 수신된 데이터를 UAE 표준 형식(PINT AE)으로 변환
- Peppol 네트워크를 경유해 거래처측 ASP로 송장 전송
- 세금 데이터 문서(Tax Data Document, TDD)를 FTA에 보고
- 전자송장 원본 데이터를 UAE 영역 내 보관



UAE 재무부 홈페이지에는 사전 승인(Pre-Approved) ASP 명단이 게시되어 있으며, 해당 명단은 신규 사업자 승인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되고 있다. 2026년 5월 기준 사전 승인된 ASP는 약 32개사 수준이며, 추가 인증 절차도 계속 진행 중이어서 의무 시행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시장 내 선택지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2026년 5월 11일 장관령 제64호 개정으로 UAE 국내 기업이 국제 ASP와 화이트라벨(White-Label) 방식으로 협업하거나 외부 PSP 기술을 활용하는 구조가 업계에서는 사실상 가능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향후 한국 ERP·솔루션 업체와 협업하는 UAE ASP가 등장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ASP 선정 시에는 다음의 실무적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자사 ERP(특히 SAP, Oracle, Microsoft Dynamics 등 글로벌 ERP) 또는 로컬 회계 소프트웨어와의 표준 커넥터 지원 여부
- 한국어 또는 영어 기술 지원 채널의 가용성과 응대 시간대
- 송장 건당 과금 방식인지, 월정액 또는 연간 정액 방식인지 등 요금 구조
- ERP 연동 초기 구축 비용 및 일정
- 장애 대응 SLA(Service Level Agreement) 및 백업 송신 채널 보유 여부

특히 한국 본사에서 통합 ERP를 운영하면서 UAE 법인의 송장 데이터를 본사 시스템에 연동하는 구조라면, ASP 선정 단계에서부터 한국 본사 IT 부서를 함께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7. 우리 수출기업의 실무 체크리스트

전자송장 제도에 대한 대응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다단계 작업이다. 단순히 ASP 계약 한 건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표] 우리 수출기업의 UAE 전자송장 의무화 대응 체크리스트

단계	점검 항목	권장 완료 시점
1. 현황 파악	최근 회계연도 매출 확인 (5천만 디르함 기준)	즉시
	B2B/B2G 거래 규모 및 거래처 현황 파악	즉시
	현행 송장 발행 프로세스 점검 (PDF·엑셀 사용 여부)	즉시
2. 시스템 점검	ERP·회계 소프트웨어의 XML·JSON 출력 지원 여부 확인	2026년 2분기
	미지원 시 업그레йд 또는 교체 방안 검토	2026년 2분기
3. ASP 선정	UAE 재무부 홈페이지에서 승인 ASP 목록 확인	2026년 2분기
	복수 업체 비교 검토 (서비스 범위·비용·지원 언어)	2026년 3분기
	<b>ASP 계약 체결</b>	<b>2026년 10월 30일 (대기업 마감)</b>
4. 시스템 연동	ERP·회계 소프트웨어와 ASP 연동 개발	2026년 9~11월
	테스트 송장 발행 및 수신 확인	2026년 12월
5. 내부 준비	재무팀·구매팀·IT팀 담당자 교육	2026년 12월
	내부 업무 프로세스 매뉴얼 정비	2026년 12월
6. 거래처 협의	주요 거래처에 전자송장 전환 일정 사전 안내	2026년 3분기
	거래처 ASP 지정 여부 및 수신 준비 상태 확인	2026년 11월
7. 파일럿 참여	자발적 파일럿 참여 (과태료 면제 기간 활용)	2026년 7월
8. 본격 운영	의무 시행일 이후 정상 운영	2027년 1월 (대기업)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UAE 거래처에 직접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와, UAE 현지법인을 두고 그 법인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는 전혀 다른 시나리오임을 구분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한국 본사는 UAE 비거주자 신분이므로 UAE 전자송장 시스템에 직접 가입하지 않으며,

UAE 측 수입자가 역지급(Reverse Charge) 방식으로 VAT를 신고하는 흐름이 일반적이다. 반면 후자, 즉 UAE 현지법인을 통한 거래라면 그 법인이 매출 규모에 따라 ASP 지정 및 전자송장 발행 의무를 직접 부담한다.

## 8. 자주 묻는 질문(FAQ)

### Q1. 한국 본사가 UAE 거래처에 CEPA 협정을 활용해 직접 수출하는 경우, UAE 전자송장 시스템에 가입해야 하는가?

가입할 필요가 없다. 한국 본사는 UAE 비거주자이므로 UAE 전자송장 시스템의 직접 가입 대상이 아니다. CEP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한국 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혹은 인증수출자 자격으로 자율 발급하면 된다. 다만 UAE 측 수입자가 역지급(Reverse Charge) 방식으로 VAT를 신고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UAE측 전자송장 시스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FTA의 세부 지침을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Q2. UAE 현지법인이 한국 본사로부터 부품을 수입한 뒤 GCC 권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두 시스템을 어떻게 함께 활용하는가?

이 경우 두 시스템이 모두 작동한다. 한국→UAE 구간에서는 한-UAE CEP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적용되어 UAE 측 수입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UAE 현지법인이 GCC 권역으로 재수출할 때에는 GCC 관세동맹 규정과 별도 협정에 따른다. UAE 내수 거래 단계(예: 한국 본사 → UAE 법인 간 결제, 또는 UAE 법인 → UAE 내 다른 사업자 거래)에서는 UAE 전자송장이 의무화된다. 양 시스템에 동일한 거래 데이터가 일관되게 입력되도록 ERP 마스터 데이터 관리가 중요하다.

### Q3. 프리존(Free Zone) 기업도 UAE 전자송장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가?

포함된다. 프리존 소재 여부와 무관하게 UAE 내에서 B2B 또는 B2G 과세 거래를 수행하는 모든 VAT 등록 사업자가 의무 대상이다. 프리존 기업의 법인세 우대와 전자송장 의무는 별개 제도를 거듭 강조한다.

**Q4. 의무 시행 이후에도 PDF 송장을 거래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가?**

거래 확인용 또는 참고 자료로 PDF를 병행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UAE 전자송장 제도상 공식 신고 및 데이터 전송의 기준은 ASP를 통해 생성, 전송된 구조화된 전자송장 데이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Q5. 거래처가 아직 ASP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전자송장 제도는 장기적으로 ASP 간 직접 연계를 통한 자동화된 송장 교환 구조를 지향하고 있으나, 제도 초기 단계에서는 ASP를 이미 구축한 사업자와 아직 도입하지 않은 사업자가 상당 기간 혼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UAE는 국제무역 비중이 매우 크고 해외 거래처 비중 역시 높은 시장인 만큼, 모든 거래 상대방이 동시에 동일한 전자송장 네트워크에 편입되는 구조를 단기간 내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초기 시장에서는 ASP를 통해 정부 보고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거래처 상황에 따라 PDF·이메일 기반 송장과 전자송장이 병행 운영되는 하이브리드(Hybrid) 형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주요 거래처가 전자송장 체계에 순차적으로 편입될수록 ASP 간 자동 송수신 및 데이터 연계 비중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Q6. ASP 이용 비용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현재 UAE 전자송장 시장에서는 ASP별 과금 구조가 아직 완전히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월정액 구독형 ▲송장 건당 과금형 ▲ERP 연동 및 초기 구축(Project Implementation) 비용 부과형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사업자 규모와 거래 구조에 따라 제안 방식도 상당히 달라지는 모습이다. 특히 제도 초기이다 보니 시장 내 다양한 사업자들이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 실제 기능 대비 과도한 구축 범위나 불필요한 시스템 통합을 권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모든 기업이 대규모 ERP 연동이나 복잡한 시스템 구축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UAE 내 소규모 지사 형태로 운영되는 한국 기업이나, 월 인보이스 발행 건수가 많지 않은 B2B 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방식의

ASP 이용만으로도 초기 대응이 가능할 여지가 있다. 실제 시장에서는 웹포털 기반 발행, 간단한 회계프로그램 연계, 이메일, PDF 병행 운영 등 비교적 경량화된 운영 모델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현재 일부 사업자들은 연간 최소 발행 건수(Minimum Commitment)나 일정 수준 이상의 패키지 사용을 전제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나, UAE 재무부 역시 제도 초기 시장 혼란과 중소기업자의 부담 가능성을 인식하고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AE가 국제무역과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시장 경쟁이 본격화될수록 보다 다양한 가격 구조와 경량형 솔루션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전자송장 의무 대응”이라는 표현만 보고 대규모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기보다는, 실제 인보이스 발행량, UAE 현지 거래 구조, ERP 운영 수준 및 향후 사업 확장 계획 등을 기준으로 적절한 수준의 ASP를 선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제도 초기 단계에서는 공급업체별 전문성과 실제 운영 경험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단순 마케팅보다는 실제 UAE VAT·ERP·Peppol 운영 이해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